

경 조 비 규 정

제정 1977. 10. 31. 개정 1994. 12. 6.
개정 1981. 12. 18. 개정 1995. 5. 1.
개정 1982. 3. 25. 개정 1998. 3. 4.
개정 1982. 5. 25. 개정 2000. 10. 10.
개정 1983. 1. 1. 개정 2001. 4. 10.
개정 1984. 4. 12. 개정 2007. 10. 16.
개정 1993. 1. 1. 개정 2014. 5. 14.
개정 1994. 11. 1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건축사협회 임직원 및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경조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>

1. 축의금이라 함은 임직원 및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결혼이나 수연이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2. 위로금이라 함은 임직원 및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였거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3. 부의금이라 함은 임직원 및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4. 퇴회위로금이라 함은 회원이 퇴회(사망시 포함)을 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5. 장례보조금이라 함은 임원 및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6. 보상금이라 함은 임원 및 회원이 협회업무 수행중 상해를 당했거나 순직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경조대상) ①경조의 대상은 본 협회 또는 해당 건축사회 임직원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관계인사에 대하여는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지급기준) ①협회 회장은 예산범위내에서 별표 I 의 지급기준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도건축사회는 이를 준용하거나 별도의 경조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14>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경조비이외에 별도의 화환 증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14>

제5조(퇴회위로금) ①회원이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고, 퇴회(사망포함)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Ⅱ의 지급기준표에 의거 퇴회위로금을 본 협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회한 회원에 한한다. <개정 2001. 4.10,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>

②퇴회위로금을 지급받은 회원이 퇴회일로부터 5년이내에 재입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퇴회위로금과 퇴회기간 동안의 이자(국세청 고시)를 반납하고 재입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회비를 면제한다. <회원신고관리규정에서 이관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>

③퇴회위로금 지급을 위한 정회원가입기간 산정은 회원신고관리규정에 따른다. 다만 재입회 회원의 퇴회시 퇴회위로금 지급을 위한 정회원가입기간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4. 5.14(시행일 2014. 6.11)>

1. 퇴회위로금 반납 회원: 종전 정회원 가입 기간 산입
2. 퇴회위로금 미반납 회원: 재입회일부터 정회원 가입기간 산정

제6조(보상금) ①회원이 협회 업무수행중 상해를 당했거나 순직한 때에는 소속 건축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0.16>

1. 상해시 : 치료비 및 요양보상금
2. 순직시 : 순직보상금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회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에서 지급한다.

제7조(장례보조금) ①임원 및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별표Ⅲ의 기준에 의한 장례보조금을 소속 건축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협회葬 및 건축사회葬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07. 10.16>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회의 역대회장 또는 현직임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장례보조금과 영결식 비용을 본 협회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07. 10.16>

1. 장례보조금 500만원
2. 영결식 비용 150만원 범위내

③제2항제2호의 영결식은 유족의 원에 의하여 본 협회 명의로 거행하는 경우에 한하며, 미거행시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7.10.16>

제8조(협회葬 및 건축사회葬) ①본 협회 또는 건축사회 회장이 재임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원에 의하여 협회葬 또는 건축사회葬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0.16>

1. 삭제 <2007. 10.16>

2. 삭제 <2007. 10.16>

②협회葬 또는 건축사회葬 거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장례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본 협회 또는 건축사회 이사회의 의결이나, 이사의 서면결의를 거쳐 협회葬 또는 건축사회葬을 거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0.16>

제9조 삭제 <2000. 10.10>

부 칙

이 규정은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(2014. 6.11)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및 별표 I 규정은 2014. 5.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건축문화발전기금운용 규정 제4조제3호 및 제5조의 “폐업위로금”을 “퇴회위로금”으로 개정한다.

<별표 I>

경조비 지급기준표

구 분	경 조 사 항	금 액
축의금	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결혼 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수연 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비속 결혼	200,000원 이내
	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수연 · 기타 축의	150,000원 이내
위로금	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 입원 (1주 이상)	200,000원 이내
	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입원 (2주 이상)	150,000원 이내
부의금	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 사망	200,000원 이내
	· 임직원, 회원 또는 관계인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	

<별표 II>

퇴회위로금 지급기준표

회원재직년수	지급금액
5년이하	1,000,000원
10년이하	1,500,000원
20년미만	2,000,000원
20년이상	3,000,000원

<별표 III>

회원장례보조금

지급금액	비 고
500,000원	회원장례보조금